간행물 관리번호
KYWA-2019-118-01

#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 사고 유형별 안전법률 Q&A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사고 유형별 안전법률 Q&A

1. 단체버스 Q&A

2. 생활관(숙박) Q&A

3. 프로그램 중 안전사고 Q&A

4. 방과후아카데미 중 안전사고 Q&A

5. 시설물 안전사고 Q&A

6.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Q&A

7. 성희롱, 성추행 관련 Q&A

8. 기타 안전사고

# 1. 단체버스 Q&A

**Q.** **단체로 버스에 탑승하여 수련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수련시설 측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A.** 휴게소에서도 관리감독의무는 인정되나, 휴게소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수련시설 측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님. 통상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고여야 수련시설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임.

참고 : 안전사고 방지할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41012 손해배상(기)

"이 사건 복도의 구조 및 폭을 감안할 때 10여 명의 방장인 학생들이 일시에 소집되어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하기 위하여 뛰어가는 경우 서로 부딪혀 부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재단 소속의 교관이 원고를 포함 한 학생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신속한 인원보고를 위하여 일시에 위 복도를 뛰어오게 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재단은 그 소속 직원인 지도 사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재단의 보험자로서 피고 재단과 각자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생활관(숙박) Q&A

**Q. 수련시설 내 숙박 공간(호실) 내에서 청소년들끼리 침대에서 뛰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수련시설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인지**

**A.** 수련시설 내 숙박 공간은 감독자의 보호감독의무가 전적으로 부여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침대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과도한 장난을 치지 말라는 주의를 충분히 하는 등으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였다면 단순히 호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련시설이 책임을 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

**Q. 수련시설 내 숙박공간(호실) 내에서 청소년 간 싸움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

**A.** 청소년 간 싸움이 발생하였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싸움에 가담한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필요성 이 있다 할 것임.

참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 · 감독의무 및 관련 사례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1] 초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의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 ·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에 대하여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가해자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들로서 비록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면, 대체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상당한 정도의 자율능력, 분별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해자의 성격도 친구들과 잘 사귀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한 사이였고, 이전에는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의 장난 등은 없었던 경우,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이 장난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교실에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에서 실과수업교재인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으로 인하여 잘못되면, 신체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거나 담임교사 등이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가능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교사 등에게 보호 · 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3. 프로그램 중 안전사고 Q&A

**Q. 청소년이 수련 프로그램 참여 중 상해를 입었고, 수련시설 측에서 적절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며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A.** 해당 사고가 수련프로그램 담당교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담당자 및 수련시설측에게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련시설 측에서 적절한 응급처치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수련시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에 관하여 청소년의 학부모에게 지급할 금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됨. 다만 보험금 지급 여부는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으로 수련시설이 책임을 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

참고 : 배상책임의 근거조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 방과후아카데미 중 안전사고 Q&A

**Q.**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 청소년에 대한 센터 측의 보호 · 감독의무는 어느 범위까지 존재하는지(청소년이 완전히 귀가할 때까지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나가는 시점까지인지? 담당선생님이 데려다 주는 곳까지인지?)**

**A.**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귀가프로그램까지 포함된 사업으로서, 센터 측은 참가 학생이 선택한 귀가방식(도보 또는 차량 등)으로 적절한 귀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 · 감독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선생님이 귀가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고에 관하여는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임.(예를 들어 도보의 경우 센터의 시야를 벗어나는 정도로 일정 범위를 이동할 때까지,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에서 내리거나 횡단보도 등을 이용할 때까지 주변 환경으로부터 참가학생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됨. 보호감독의무의 범위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참고 : 배상책임의 근거조문

–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5. 시설물 및 활동장비 안전사고 Q&A

**Q.** **본래 청소년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구조상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시설이 존재할 때, 수련시설 측이 해당 시설을 본래 용도와 달리 장난스럽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고지한 경우. 그럼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청소년들이 위 시설을 이용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수련시설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A.** 수련시설은, 구조상 사고가 쉽게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장난스럽게 사용하지 말라는 고지를 하는 것을 넘어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만 접근을 허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접근을 차단하는 등으로 더욱 적극적인 사고방지조치를 취하는 편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됨. 보호감독의무의 범위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Q.** **체육수업 중 매트가 밀려 청소년이 발목을 다쳤을 때 수련시설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피해청소년: 중학교 2학년생)**

**A.** 해당 체육수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는 매트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있어야함에도 외부적 요인이 없이 단순 수업 중에 매트가 밀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수련시설 측이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됨. 다만 매트를 위험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등 피해학생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과실의 정도는 피해학생의 사리분별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이 치료비담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임.

**Q.** **기관 내 노래방 사이키 조명 과열로 인한 연기가 발생하여 노래방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이 이를 흡입한 경우, 수련시설의 병원비 배상 책임(다수의 청소년)**

**A.** 기관이 시설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수련시설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 경우에도 치료비담보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임.

**Q. 청소년이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에 캠프장 강당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였음. 뇌진탕이 의심되어 응급실에서 치료 받은 경우, 수련시설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방법 (피해청소년: 중학교 1학년생)**

**A.** 캠프장 강당에 미끄러운 물질이 잔존하고 이를 수련시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수련시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이 치료비담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임.

참고 : 체육시간에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00. 8. 25. 선고 97가합21478 판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체육수업을 지도한 교사가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축구시합 전에 학생들에게 축구시합에서의 유의사항과 규칙을 설명하고, 체육수업에 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참관만을 하게 하였고, 달리기와 체조 등으로 준비운동을 하게 한 후 축구시합에 임하게 하고 축구시합 도중에도 심판으로 직접 참가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치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면, 지도교사는 시합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축구시합을 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참고 :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근거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6.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Q&A

**Q.** **체육수업 시간에 A와 B가 같이 뛰다가 A가 B의 발을 밟고 넘어지면서 발이 꺾인뒤 통증이 계속됨. 지도사가 파스를 뿌려주고 내일도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말해줌. 이에 청소년이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경우, 수련시설의 손해배상 책임 및 배상하는 방법(피해청소년: 중학교 1학년생)**

**A.** 체육수업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통상의 수업방식을 넘어 무리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A가 B의 발을 밟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부상에 관하여 지도사 선생님 또는 수련시설에게도 책임이 있을 것임. 그러나 통상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중 A와 B 스스로의 과실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지도사선생님 내지 수련시설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임.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이 치료비담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임.

**Q.** **샌들을 신은 청소년이 친구들과 야외에서 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짐. 통증을 호소하여 지도사가 소독제를 뿌리고 밴드를 감아 응급조치하였음. 그럼에도 청소년에게 통증이 계속되자 병원에 내원하였고 왼쪽 엄지발톱 앞 피부가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수련시설의 손해배상 책임 및 배상하는 방법(피해청소년: 초등학교 6학년생)**

**A.**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돌부리가 통상 대지에 놓일 수 있는 돌부리가 아니라, 이례적으로 놓여있던 돌부리라면 수련시설이 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렇지 아니하고 통상 도로에 놓여질 수 있는 돌부리로서 청소년 스스로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사고에 관하여 수련시설측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함. 더구나 적절한 응급처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사고 후 처치과정에서의 의무위반도 인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사료됨.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이 치료비담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임.

**Q.** **청소년A와 B가 복도에서 장난치다가 지나가던 C와 부딪혀 넘어짐. 이에 A는 발목을 접지르고 무릎 타박상을 입어 지도사와 함께 인근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수련시설의 손해배상 책임 및 배상하는 방법(피해청소년: 중학교 1학년생)**

**A.** 복도에서 과격한 방식의 장난을 삼가라는 취지의 고지를 하고, 복도에도 같은 취지의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으로 수련시설이 사고방지의무를 다하였다면 수련시설 측에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됨. 이후 응급 처치 역시 적절하였다면 수련시설 측은 손해배상책임을 거의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이 치료비담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임.

**Q.** 난타 수업 중 청소년 A와 B가 강사에게 리듬 검사를 받고 서로 난타채 양쪽을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장난치다가 B가 난타채를 놓쳐 A의 앞니에 맞아 영구치 위쪽 오른쪽 앞니가 부러지고 오른쪽 아랫니 일부가 손실된 경우, 수련시설의 손해배상 책임 및 배상하는 방법(피해청소년: 초등학교 5학년생)

**A.** 수련시설에 난타채를 놓쳐 부상을 입는 선례가 존재한다면 해당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수련시설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난타채를 놓치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수련시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수련시설이 예견가능한 사고였다 하더라도 난타채를 이용하여 장난을 치는 경우 부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상가능성이 낮은 난타채를 제공하는 등으로 사고방지의무를 다하였다면 수련시설측은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이 치료비담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임.

**Q.** 휴식시간 대강당에서 A청소년이 앞구르기를 하던 중 B청소년의 발가락을 밟아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수련시설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피해청소년 연령 미상)

**A.** 앞구르기 수업을 진행하는 때가 아니라 단순 휴식 시간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수련시설 측에게 중대한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사료됨. 만일 앞구르기 수업 중에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수련시설 측 담당자는 앞뒤 학생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수련시설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이 치료비담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임.

**Q.** 청소년들이 친구들끼리 축구를 하던 중 골키퍼 역할을 하던 청소년이 공을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에 공을 세게 맞음. 해당 청소년이 통증을 호소하여 수련시설측에서 파스를 뿌리고 손을 고정하여 응급조치을 해주었음. 청소년이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손가락 검지, 중지가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수련시설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피해청소년: 초등학교 6학년생)

**A.** 통상의 축구경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부상으로서, 이는 수련시설측의 주의 의무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수련시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사료됨.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이 치료비담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임. 비담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임.

**Q.** 쉬는 시간, 청소년들이 의자에 올라가서 장난치다 넘어지면서 의자에 턱을 충격한 경우, 수련시설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피해청소년 연령 미상)

**A.** 쉬는 시간에 수련시설이 예측하여 방지할 수 있는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이에 더하여 청소년에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고지를 계속하여 실시하는 등으로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수련시설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이미 수업 막바지에 의자를 이용하여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수련시설이나 선생님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 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정 부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이 치료비담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임.

**Q.** 캠프 자유 수영 시간 중 A가 B학생 등 위에 올라타자 B학생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A학생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충격함.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은 경우, 수련시설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방법(피해청소년 연령 미상)

**A.** 자유수영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등 위에 올라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관리감독 담당자에게 이를 제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위 사고에 관하여 수련시설측이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사료되나, A학생 스스로가 사고발생을 유발한 측면이 크므로 A학생과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등 위에 올라탄 행위가 감독자가 제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일어나는 등 도저히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수련시설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임. 다만 수련시설이 치료비담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임.

**Q.** 청소년들이 주말체험 수련프로그램으로 롤러스케이트를 타던 중 청소년 A가 장난으로 청소년 B를 밀침. 이에 B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손을 짚어 손목을 다친 경우, 수련시설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방법(피해청소년: 중학교 1학년생)

**A.** 장난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러한 행동을 금지하라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고, 이러한 안내를 무시한 A가 B를 미는 순간을 선생님이 예견·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선생님 또는 수련시설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임.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이 치료비담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임.

**Q.** **개인 휴식시간 중 생활관에서 A학생이 향수를 몸에 뿌리는 것을 본 B학생이 A의 향수를 빼앗으려고 엎치락 뒤치락 하던 중 넘어져 B의 발가락에 골절상이 발생함. 부상을 입은 학생은 사고 직후 수련원 담당자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 수련시설의 손해배상 책임 및 손해배상방법(피해청소년 연령 미상)**

**A.** 개인 휴식시간 중, 생활관에서 우연스럽게 발생하는 위와 같은 사고는 지도사 선생님이나 수련시설이 도저히 예견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방지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고라 할 것임. 따라서 이후 병원 이송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담당선생님이나 수련시설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사료됨.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이 치료비담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치료비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임.

**Q.** **수련시설 캠핑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 A와 B가 장난을 치다가 캠프장의 유리창을 깨트림. 이로 인하여 청소년 A는 상해를 입었으며, 캠프장은 유리창 변상을 요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관계 및 배상방법(피해청소년 연령 미상)**

**A.** A가 입은 부상에 관하여 수련시설의 책임은 없다고 보여지며, 유리창 변상 내지 부상에 관한 손해배상은 A와 B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사료됨. 따라서 캠프장의 유리창을 변상할 책임은 궁극적으로 A와 B의 학부모에게 있다 할 것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수련시설이 우선 변상을 한 뒤 가해학생들에게 구상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수련시설이 치료비담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치료비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임.

참고 : 체육시간에 교사의 보호 · 감독의무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만 14세 4개월의 중학교 2년생이 체육시간에 피해자의 잘못으로 체육교사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직후의 휴식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단체기합의 정도 등에 비추어 체육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에게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00. 8. 25. 선고 97가합21478 판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체육수업을 지도한 교사가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축구시합 전에 학생들에게 축구시합에서의 유의사항과 규칙을 설명하고, 체육수업에 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참관만을 하게 하였고, 달리기와 체조 등으로 준비운동을 하게 한 후 축구시합에 임하게 하고 축구시합 도중에도 심판으로 직접 참가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치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면, 지도교사는 시합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축구시합을 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 7. 성희롱, 성추행 관련 Q&A

**Q.** 담당선생님이 청소년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안내하였음에도 갑자기 '선생님이 나에게 속삭였다'면서 성추행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

**A.**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행위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움. 청소년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불쾌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해당 청소년의 자유의사이므로 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선생님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보임.

**Q.** 수련시설 소속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 선생님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A.**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라는 사실로 인하여 고소 · 고발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선생님은 가해학생을 상대로 형법상 강제추행 내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음.

참고 : 관련 법조문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 기타 안전사고 Q&A

**Q.** 수련원 내 조리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 발생한 경우

**A.** 청소년들이 직접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련원이 식자재를 제공하였고, 제공된 식자재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중독에 관하여 수련원에게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임. 청소년이 직접 준비해온 식자재라 하더라도 수련시설 측은 해당 식자재의 상태를 검수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만일 직접 가져온 식자재를 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다면 수련시설에게 책임이 발생할 것이라 사료됨. 또한 수련원이 제공한 냉장시설에 식자재를 보관하였으나, 냉장시설에 하자가 있어 식자재가 변질되어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으로 수련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식중독에 관하여 수련시설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Q.** 수련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해온 도시락을 수련시설 측에서 수거하여 보관한 뒤 다시 내어주었을 때 그 도시락에서 발생한 식중독에 대한 책임 여부

**A.**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다만 한여름에 진행하는 수련 프로그램에서 도시락을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음식물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시설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것이라 사료됨.
따라서 수거 즉시 적정한 냉장시설에 보관하여 변질을 방지하는 등 통상의 관리방 법대로 보관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련시설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추가 분쟁 발생 가능성 Q&A

**Q. 청소년의 학부모가 수련시설 측에 문제를 제기하며 피해배상을 요구하나, 청소년이 주장하는 사실과 수련시설측이 주장하는 사실이 다른 경우 해결 방안**

**A.**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할 것임. 수련시설측에 잘못이 없음에도 청소년의 학부모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CCTV나 근무일지 등을 통하여 필요 이상의 과도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Q. 청소년이나 그 학부모가 안전사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이유로 수련시설에 대하여 민 ·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A.**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련시설은 관련 기록과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대로 진술함으로써 부당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수련시설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내지 무고죄로 고소·고발을 할 수 있음.

**Q. 청소년이나 그 학부모가 안전사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A.**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여 수련시설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범죄행위를 저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하는 경우 수련시설은 그에 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제보자를 고소 · 고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Q. 청소년이나 그 학부모가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여 수련시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수련시설의 대처방안**

**A.**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로서, 만일 안전사고 발생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연히 유포하여 수련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규율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제보에 대하여 고소 · 고발을 진행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Q.** **학교안전공제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각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는지**

**A.** 보험계약 간에 당연한 우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보험금 청구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금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다만, 각 보험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구의 우열과 보험금의 배분을 달리 정하였을 수 있으므로 각 보험약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참고 : 관련 법조문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